

수원지방법원 2023. 9. 12 선고 2022가단10992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4. 11. 21 선고 2023나93551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3. 9. 12 선고 2022가단10992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

담당변호사 박충성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맥

담당변호사 조미현

변론종결 2023. 8. 8.

판결선고 2023. 9. 12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41,7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6. 2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원고는 대여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).

이 유

1.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, 피고가 C계의 계주이고 자신은 위 C계의 전산담당자로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가 정한 분배방법에 따라 피고와 그 계원들에게 고스란히 분배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계 운영을 도와주었는데, 피고가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2022. 6. 22. 3,652만 원, 2022. 6. 23. 1,400만 원 합계 5,052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중 4,17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. 살피건대, 원고가 위 3,652만 원을 송금하면서 C계원으로 보이는 'D E 리스크완'으로 표시한 점(갑 제1호증의 1),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'리스크 정리를 위해 송금한 5,052만 원'이라고 기재한 점(갑 제2호증의 1)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들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2.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선택적으로, 피고가 C계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위 계 운영을 위해 피고에게 위 금원들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4,17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민법 제741조는 “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.”라고 정하고 있다.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

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, 취소,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).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자신의 의사로 피고에게 위 금원들을 송금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‘리스크 정리를 위해 송금한 돈’이라고 기재한 점, 원고는 자신이 C계의 전산담당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전산담당자에 불과한 원고가 ‘피고가 C계를 운영하는 것’을 조건으로 하여 위 금원들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,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피고의 권유로 계에 가입했던 E, F, D 등에게 계 가입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선택적 청구들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허정룡